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2007. 5. .

제 출 자: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중 연금보증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토록 하는 조항 신설 (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
- 경상북도 세정과-1726(2006.11.01)호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 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생략) 〈신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생략)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참 고 자 료

□□관 련 법 령

□□시 세 감면조례 표준안(행자부, 2006.11)

관 련 법 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
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1.11>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4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구상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사 및 기금·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부칙 <제8236호, 2007.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②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한다.

시 세 감면조례 표준안

(행정자치부, 2006.11)

제○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 0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